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-7호
Dec. 2023

법령해석 사례

-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로 진행하게 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 (230291)-

▪ 요청대상 행위

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복수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동의 후 자동이체를 진행 중에 있는데, 서비스가 분리되어 출금을 별도로 진행(출금계좌 동일, 출금날짜만 별도 지정)하는 경우 고객동의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지 여부

▪ 관련 법령 요지

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인(고객)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는 출금 동의시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가 동일인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함

추심이체 출금 동의는 수취인, 예금주, 출금계좌를 출금동의 효력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, 해당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별도 동의가 필요함

▪ 회신 요지

서비스가 분리되더라도 지급인의 출금계좌는 동일하며 수취인도 변경되지 않는 등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. 다만 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출금 날짜를 수취인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날짜의 별도 지정에 대한 지급인 동의나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